

훈 령

◎ 서울특별시 훈령 제 370 호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본부 운영규정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1973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경찰국 수사본부 운영규정 개정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살인 기타 중요특이사건(이하 "특별중요사건"이라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의 기능을 통일적으로 또한 강력하게 발휘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사활동을 추진하므로서 종합수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수사본부의 운영에 필요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사본부의 설치) 경찰국장은 특별·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경찰국 형사과장 및 주무계장 또는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수사본부의 설치를 명하여 그사건을 특별수사하게 할 수 있다.

제 3 조 (수사본부의 설치장소) 수사본

부는 수사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다른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수사본부의 설치지시) 경찰국장은 수사본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관하 경찰서장에게 다음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설치 장소
2. 사건의 개요
3. 수사요강
4. 전 각호에 필요한 사항

제 5 조 (수사본부장이 되는자 및 그임무)

① 수사본부장은 다음 자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경찰국장이 지명한다.

1. 경찰국 주무과장
2. 경찰국 주무계장
3. 관할지 경찰서 수사과장
4. 관내에서 3개이상의 본부설치 대상사건 발생시는 경찰국 수사과장

② 수사본부장은 수사본부사건(이하 "본부사건"이라한다)의 수사본부요원을 지휘감독하며 수사본부를 운영 관리한다.

제 6 조 (수사부분부장과 수사전임관이 되는자 및 그임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수사본부의 부분부장이 된다.

1. 경찰국 주무과장이 본부장이 되었을때

가. 경찰국 주무계장

나.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의 서장

2. 경찰국 주무계장이 본부장이 되었을때

가.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의 수사과장

나. 경찰국장이 지명하는 경정 또는 경감

3. 관할지 경찰서 수사과장이 본부장이 되었을때

가. 수사본부가 설치된 경찰서의 형사계장

②수사부분부장은 수사본부장을 직접 보좌하며 수사본부 운영관리의 역할을 기하고 인접 경찰국 서간의 공조 수사지휘에 임한다.

③전항의 편성에 있어서는 경찰국 주무과의 경정 또는 경감을 수사전임관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서의 경감 또는 경위를 부전임

관으로 하여 수사본부의 중추로서 각각 수사의 추진에 임한다.

④전임관과 부전임관은 별도 임명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며 전항의 대상자중에서 수사본부장이 지명 근무하게 한다.

⑤수사본부장은 본부요원을 편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 경찰서로부터 요원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⑥수사본부에 파견된 요원은 본부장의 지시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타시도 본부장으로 부터의 공조 제보는 성실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경찰서장의 임무) ①경찰서장은 수사본부 사건수사에 있어서 본부장의 통제에 따라 본부장으로 부터 지시된 수배조사 기타 필요한 수사를 신속 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사주무계 경위 1명을 본부 사건수사에 담당하도록 명하고 파출소 관내의 수배조사등 제반 수사에 대하여 전력을 경주하게 한다.

③각 경찰서장과 기타 관계 소속장은 본부사건에 관련된 정보 기타 수사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하고 지체없이 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지휘를 받아야한다

제 8 조 (초동수사반의협력) 초동수사반은 기출동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본부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수사결과를 신속히 수사본부에보고 인계하는 동시에 그후의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9 조 (인접경찰서수사간부의임장) 본부사건 발생지의 인접경찰서 수사주무과장은 본부사건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수사본부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신속히 범죄현장에 임장하여 수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 10 조 (수사회의회) 수사본부장은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본부 요원과 관계 소속직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1 조 (비치서류) ①수사본부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수사 전임관이 당해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건수사 지휘 및 진행부
2. 수사일지 및 형사 배치표
3. 수사보고 서철
4. 용의자 명부
5. 참고인 명부

②경찰국 또는 경찰서 주무과장은 전항의 비치서류와 사건기록의 사본을 작성하여 일괄 편철 비치하고 재검토 반성하는 동시에 금후의 수

사 및 교양자료로 한다

③전항의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검거사건인 경우에는 3년 미점인 경우에는 공소시효완성후 1년으로 한다.

제 12 조 (수사본부의해산) ①경찰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본부의 해산을 명한다.

1.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
2. 상당한 장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에 전망이 없을 때
3. 전 각호 이외에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②경찰국장은 수사본부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관하 경찰서장 기타관계 소속장에게 그 취지를 시달하여야한다

제 13 조 (수사검토회) 본부장은 수사본부의 해체에 즈음하여 특히 필요없다고 인정할때를 제외하고는 그 본부사건의 수사관계자를 소집하여 수사검토회를 개최하고 수사실행의 경과를 반성 검토하는등 수사기능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속수사) ①수사본부장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를 해체할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계속수사를 담당하여야 할 주무

과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관계서류
증거물등을 인계하고 사후 수사를
시행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주어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를 인수한 주무과장
또는 경찰서장은 연 4회 이상 수
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한 결과
전연 검거할 가망이 없는 사건은
경찰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수사
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서기 1973년 8월 20일부
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훈령제 371 호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위임전결규정을
이에 정한다.

1973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 소방본부
위 임 전 결 규 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본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책임과 권한
에 의한 결재한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전결구분) ①소방본부장, 과
장, 계장 및 기능별분담자는 별표
에 의한 전결구분에 의하여 각각
전결한다.

②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
받는자는 그 전결사항에 비하여
경이한 사항을 전결한다.

제 3 조 (이례사항) 전결사항이라도
중요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은
의견을 붙여 사전에 차상급결재권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전결의 제한) 전결사항으로
서 다른 과, 제의 소관에 관련된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다른 때에는 차상급 결재
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 6 조 (통제) 문서통제관은 이 규
정에 따른 전결의 정확한 실시여
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사항
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3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5-5

별표		위 임 전 결 구분표				
일련 번호	주 관 별	전 결 사 항	분 부 장	과 장	계 장	담 당 자
1	각과및 계 공통 사항	소방행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방침	○			
2	"	소방행정운영에 관한 세부실천계획 및 시행		○		
3	"	소관사항중 타부처와 관련된 사항	○			
4	"	사회의 불의를 야기할 중요보고 및 처리	○			
5	"	상보 및 통보사항의 각종 첩보 처리		○		
6	"	참고사항의 첩보 처리				○
7	"	소방령 (소방총경) 의 조퇴 및 외출	○			
8	"	소방경정, 소방경 (소방경감) 의 조퇴 및 외출		○		
9	"	소방위 (소방경위) 이하의 조퇴 및 외출허가			○	
	"	(각과 서무계장에 한함)				
10	"	소방위 (소방경위) 이하 소속파원의 근무지정 및 사부분장		○		
11	"	감독순시		○		
12	"	소속직원의 특근명령			○	
13	"	소방위 (소방경위) 급 이상의 관외출장	○			
14	"	소방사이하의 관외출장		○		
15	"	조사복명 및 질의회시		○		
16	"	업무일지의 확인			○	
17	"	정례보고 통계제출 및 자료수집				○
18	"	파원 숙소부 정리				○
19	"	각과 규정외의 민원서류 처리				○
20	"	각종 면허시험 관리			○	
21	"	제교양 및 훈련지도		○		

일련 번호	주 관 별	전 결 사 항	본 부 장	과 장	계 장	담 당 자
1	서 무 계	소방경정급이상 근태에 관한 사항	○			
	"	소방경 (소방경감), 소방위 (소방경위) 급		○		
	"	근태에 관한 사항				
3		소방사이하 근태에 관한 사항			○	
4	"	소방경정 이상 교육지정	○			
5	"	소방경 (소방경감), 소방위 (소방경위) 급 교육지정		○		
6	"	소방사 이하 교육지정			○	
7	"	소방경 (소방경감), 소방위 (소방경위) 급 이상의 근무지정	○			
8	"	소방사 이하의 근무지정			○	
9	"	소방경 (소방경감), 소방위 (소방경위) 의 승진, 승급, 전보, 휴직, 정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파면	○			
10	"	소방사이하의 임용	○			
11	"	소방사이하의 전보			○	
12	"	소방공무원의 포상	○			
13	"	기능직고용원의 임면			○	
14	"	신분증명서 발급 및 회수				○
15	"	비밀취급인가				○
16	"	공무원 년금불입 및 환부금 신청				○
17	"	인사기록 카-드 정리				○
18	"	소방공무원 년금카-드 처리				○
19	"	소방관 정원 책정	○			
20	"	월중 운영계획작성			○	
21		문서통제, 간행 및 수발				○

일련 번호	주 관 별	진 결 사 항	분 부 장	과 장	계 장	담 당 자
22	서 무 계	보존기일 경과분석 폐기처분		○		
23	"	당직 및 청중단속		○		
24	"	직원의 건강관리			○	
25	"	복제에 관한 사항			○	
1	감 찰 계	소방행정 감사	○			
2	"	간부급이상 감찰민원	○			
3	"	비간부급의 감찰민원		○		
4	"	일반감찰사건		○		
5	"	소청사건		○		
6	"	제고, 장려장 발급		○		
7	"	징계심의 의결사항		○		
8	"	출석요구				○
1	장 비 계	예산편성 자료	○			
2	"	예산배정요구 (증감포함)		○		
3	"	예산유용 요구	○			
4	"	공사집행	○			
5	"	보증잡금, 여비, 공공요금, 제세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집행품의	○			
6	"	급대용품 출납	○			
7	"	비품출납 및 관리전환	○			
8	"	소방차량 관리전환	○			
1	방 호 계	경방계획 및 화재진압	○			
2	"	화재방어 검토회의	○			
3	"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		
4	"	중요화재사건	○			

일련번호	주관별	전 결 사 항	본부장	과장	계장	담당자
5	방호계	경미화재사건		○		
6	"	위험물제조소등 허가	○			
7	"	위험물제조소등 단속		○		
8	"	위험물취급주임 면허시험 및 면허증 교부	○			
9	"	위험물취급주임 면허증 재교부			○	
10	"	위험물취급주임 교양		○		
11	"	위험물취급주임 적성검사		○		
12	"	소방수리 유지관리		○		
1	예방계	화재경계지구 지정	○			
2	"	소방경사		○		
3	"	소방시설 축전		○		
4	"	소방대살물 개수명령	○			
5	"	건축허가 및 준공동의 업무		○		
6	"	예방관계 민원조사		○		
7	"	방화순찰		○		
1	홍보지도계	소방홍보계획	○			
2	"	불조심 제몽지도		○		
3	"	공보간행물 발간부	○			
4	"	소방공보관계 민원처리		○		
5	"	소방훈련지도		○		
6	"	방화관리자 강습 및 기타 교양	○			
7	"	소방설비사 면허	○			
8	"	소방기구 판매업소 허가 및 단속	○			
1	지령실	무선통신 암호계정 및 개정	○			
2	"	통신장비 관리		○		
3	"	통신기기의 시설 이설 및 철거	○			
4	"	통신시설의 보수		○		
5	"	화재활동 지령				○
6	"	통신요원 지도감독			○	
7	"	화재속보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35 호

도시계획운동장(수영장)
시설지적 승인

1. 건설부 고시제 309호(73.7.25)

로 운동장 시설결정에 따른 지적

가. 운동장시설결정조서

승인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여드리고 있다.

1973. 8. 16.

서울특별시장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운동장(수영장)	용산구 동부이촌동 302-105	1,342 m ²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136 호

도시계획사업(경기고등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66호

(72.11.6) 및 제 127호(73.7.26)

로 결정한 도시계획사업(경기고등
학교 종합시설의)의 시행을 다음
과같이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123 호
(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1973. 8. 16.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성동구청담동 221-1 의 8 필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경기고등학교종합시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서울특별
시 교육위원회교육감
4. 시행면적: 106,434

<p>5. 사업의 착수 준공예정 년월일 가. 착 수 : 1973. 나. 준공예정일 : 1974.8.</p> <p>6.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p> <p>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p> <p>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p>	<p>1. 건설부 고시제 318 호 (73.9.1) 로 시설 (대학교) 결정에 따른 지적승인을 다음과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p>
--	---

◎ 서울특별시 고시제 137 호

1973. 8. 16.

도시계획시설(대학교) 지적승인

서울특별시 장

가. 학교시설결정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증축	학교(건국대학교)	성동구 (모진, 화양, 자양, 구의) 동 일부지역	495,370	
신축	학교(덕성여대)	도봉구 쌍문동 414-11외90여필지	145,278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 서울특별시 고시제 138 호

도시계획시설 (국민학교)
결정과변경 및 지적승인

1. 도시계획시설 (국민학교) 결정과
변경 및 지적승인을 다음과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

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1973. 8.17.		
가. 도시계획학교시설 결정 및 변경조서		서울특별시		
순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1	동봉천국민학교	관악구봉천동 692-9 외 13 필지	10,560㎡	학교용지 폐
2	명덕국민학교	도봉구월계동 470 외 7 필지	9,514㎡	
3	망원국민학교	마포구망원동 266-10 외 6 필지	10,503㎡	
4	신우이국민학교	도봉구쌍문동 363-2 외 3 필지	12,309㎡	
5	신도림국민학교	영등포구신도림동 741-3 외 13 필지	12,025㎡	
6	국민학교용지변경	도봉구수유동 192-1	11,421㎡	
<p>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10px 0;">공 고</div> <p>경 지정하였기 공고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3. 8.16.</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p>				
<p>◎ 서울특별시공고제 159 호</p> <p>제 3종미관지구(관광도로) 일부변경 지정</p> <p>1. 당시 관내제 3종미관지구중 관광도로 일부를 일반미관도로로 변경한다.</p> <p>가. 3종 미관지구 변경조서</p>				
구분	종별	구간	연장	비고
기 존 변 경	관 광 도 로	남산도서관앞-한남 동삼거리	2,250 ㎞	
	일 반 미 관 도 로	이태원 258 - 한남동 3거리	600 ㎞	
	관 광 도 로	남산도서관앞-이태원 250	1,650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사 령

◎ 1973.7.30.

행정개혁위원회 서기관 한남영
지방서기관에 임함.

6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근무를
명함.

◎ 1973.8.1.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김갑식
전매청 전출을 명함.

◎ 1973.8.13

주택건설과 지방행정서기 김동만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3.8.15.

마포구 농림지원 전병도
지방농림지원에 임함.

8호봉을 급함.

남부늬지사업소 근무를 명함.

◎ 1973.8.16.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토목사 변원성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최형규
수도사업소

성동구(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문대춘
수도사업소

성동구(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김중성
수도사업소

성동구(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 이종근
수도사업소

도봉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 김세중
수도사업소

도봉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서기 한형석
수도사업소

영등포구(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서기 염세동
수도사업소

영등포구(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송종석
수도사업소

서대문구(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박종태
수도사업소

서대문구(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서기 이정오
수도사업소

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이기표
수도사업소

서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 서기보	조진영	경리과 근무를 명함.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 서기보	서영규	서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보	김찬주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경리과 근무를 명함.	
아동보호소 지방행정 서기보	박상호	성 북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주 사	손홍규
서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건설행정과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 서기보	홍유현	건설행정과 지방행정 주사보	박용덕
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경리과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 서기보	조양웅		
서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서기보	강용식		
용산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 1973.8.17	
마 포 구 지방행정 서기보	김기성	용 산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기보	유인배
마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제 65조의 2	
동 대 문 구 지방행정 서기보	박근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그직위를 해제함.	
중 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서기	정성택	새마을지도과 지방행정 주사보시보	최병국
도봉구 근무를 명함.			
동 대 문 구 지방행정 서기보	유병갑	지방공무원법제 63.조제 1항	
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호담당관실 지방행정 주 사	김영찬	휴직을 명함.	

<p>◎ 1973. 8.18</p>		<p>성북구 근무를 명함.</p>
<p>중로구 지방행정 수도사업소 주</p>	<p>정원근</p>	<p>김명연</p>
<p>업무과 (상수도특별기동반) 파견</p>		<p>지방농림기원 시보에 임함.</p>
<p>서대문구 지방행정 은평출장소 주</p>	<p>이상범</p>	<p>1호봉을 급함.</p>
<p>업무과 (상수도특별기동반) 파견</p>		<p>관악구 근무를 명함.</p>
<p>동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보</p>	<p>정춘섭</p>	<p>김갑성</p>
<p>업무과 (상수도특별기동반) 파견</p>		<p>지방기계기원보 시보에 임함.</p>
<p>중구 지방행정 주</p>	<p>장연태</p>	<p>1호봉을 급함.</p>
<p>업무과 (E.D.P.S요원) 파견</p>		<p>기전과 근무를 명함.</p>
<p>세정과 지방행정 기서</p>	<p>박준일</p>	<p>서봉선</p>
<p>업무과 (E.D.P.S요원) 파견</p>		<p>지방간호기원보 시보에 임함.</p>
<p>세정과 지방행정 기서</p>	<p>신동필</p>	<p>1호봉을 급함.</p>
<p>업무과 (E.D.P.S요원) 파견</p>		<p>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p>
<p>지하철 지방행정 건설본부 주</p>	<p>김영년</p>	<p>배영숙</p>
<p>지하철건설본부 관리과 관제</p>		<p>지방간호기원보 시보에 임함.</p>
<p>계장 직무대행을 명함</p>		<p>1호봉을 급함.</p>
<p>◎ 1973. 8.20</p>		<p>중부병원 근무를 명함.</p>
<p>영등포병원 지방약무 기원보</p>	<p>김경수</p>	<p>최종춘</p>
<p>지방보건연구원보에 임함.</p>		<p>지방간호기원보 시보에 임함.</p>
<p>2호봉을 급함.</p>		<p>1호봉을 급함.</p>
<p>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p>		<p>중부병원 근무를 명함.</p>
	<p>이주홍</p>	<p>이길순</p>
<p>지방농림기원보 시보에 임함.</p>		<p>지방간호기원보 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1호봉을 급함.</p>

<p>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 style="text-align: right;">이 창 선</p> <p>지방간호기원보 시보에 임함.</p> <p>1호봉을 급함</p> <p>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 1973. 8. 25</p> <p>산림청조림과 농림기원 이 성 수</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지방농림기원에 임함.</p> <p>2호봉을 급함</p> <p>녹지과 근무를 명함.</p> <p>논 산 군 지적기사보 정 인 수</p> <p>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p> <p>지방지적기원에 임함.</p> <p>6호봉을 급함.</p> <p>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장</p>	
Empty space for signature or stamp	